

1. 개정이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대상으로 부정기선사(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추어 부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기 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인증 기준 신설(안 별표 4의2)

1)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해운법 제47조의2)는 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만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유,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부정기선사와 화주를 인증 대상으로 추가하여 선화주 상생 기반을 확대하고 공급망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운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임.

2)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부정기 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수산부령 제 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제26조의7 관련)

<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 및 이용 화주 >

인증분야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공 통		리더십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 의지
			선화주 상생 계획
		사업 안정성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재무 안정성
		공익성	「해운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준수 정도
			경제 기여도
			해운산업 기여도
핵심 기준	화주	동반성장 노력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의 지속성
			그 밖의 동반성장 노력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
			장기계약 체결 비중
			최소약정물량 준수
	선사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상생 서비스 수준	서비스품질
			선사의 차별화 서비스
		해운 서비스 전략	항로 배선 계획
			화주 대응 수준
			해운산업 친환경 정책 기여도

<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및 이용 화주 >

인증분야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공 통		리더십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 의지
			선화주 상생 계획
		사업 안정성	장기계약 프로젝트의 안정성
			재무 안정성
		공익성	「해운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준수 정도
			경제 기여도
			해운산업 기여도
핵심 기준	화주	동반성장 노력	장기계약 기간
			선박 제공 여부
			그 밖의 동반성장 노력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	장기계약 운임 조건
			장기계약 적합성
			부대 조건 등 계약 공정성
	선사 (법 제24조 제2항에 따 라 외항 부정 기 화물운송 사업을 등록 한 자를 말한 다.)	상생 서비스 수준	서비스품질
			선사의 차별화 서비스
		해운 서비스 전략	선적지/양하지 서비스 수준
			화주 대응 수준
			해운산업 친환경 정책 기여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